

# 예 산 총 칙

2022년도 본 예산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6,168,106	16,085,043
일반회계	471,000,000	14,130,000
특별회계	65,168,106	1,955,043
공기업특별회계	12,627,486	378,825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12,627,486	378,825
기타특별회계	52,540,620	1,576,219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973,649	29,209
주차장특별회계	350,000	10,5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59,147	4,77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7,251,650	517,55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38,780	7,163
치수사업특별회계	305,207	9,156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특별회계	31,400,000	942,000
도시개발특별회계	1,800,000	54,000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62,187	1,86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810,336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8,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수 있다.